

2023년 경북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추가 모집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전문(연) 등)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23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포항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개요

- (목적) 기술사업화 전주기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지역 주도 강소형 첨단신소재 거점 육성”
- (육성방향)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을 통한 첨단신소재분야(바이오/에너지/나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지원
- (육성전략) 기술핵심기관 및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기반으로 첨단신소재분야 창업초기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상용화 - 성능시험 - 시제품제작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

2. 공고대상 사업

사업명	사업지원 대상	예산 (백만원)	지원 내용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화를 진행 하고자 하는 특구 내 기업	160	기업과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매칭 또는 기업 단독으로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사업화 초기 실증지원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	특구 내 첨단신소재분야 기업	60	첨단신소재(바이오·에너지·나노 소재) 제품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시험, 안전성평가,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기업 맞춤형 지원

※ 위 내용은 세부분야별 지원내용의 요약정보이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은 별첨의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사업 안내를 확인하시고 내용에 맞게 신청 바랍니다.

[별첨 : 2023년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공고문 1식]

2023년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 사업 지원 공고

I 세부사업 내용 및 신청접수 안내

■ 포항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세부사업 구성

1.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3
2.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	13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http://innoplis.postech.ac.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innopolis.or.kr>)
- 포항공과대학교(<https://www.postech.ac.kr>)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http://www.rist.re.kr/>)
- 포항테크노파크(<https://www.ptp.or.kr/>)
- 포항시(<http://www.pohang.go.kr/>)

■ 공고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상기 세부사업별 접수기간 종료일의 18:00까지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수방법)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마감시한(접수기간 종료일 18:00)까지 온라인 E-mail 접수

- ##### - 신청 : 사업별 담당자 E-mail 주소로 신청

사업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1.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23. 6. 20. ~ '23. 6. 29.	'23. 6. 20. ~ '23. 6. 29.
2.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기술이전 실증 지원사업	박성조 (책임)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2.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	임지영 (주무관)	054-279-9305	lly940215@postech.ac.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세부사업별 공고문”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포항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사업 자체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본 공고사업의 평가·관리에 적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대상 R&D를 통한 공공기술 실증 지원으로 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

☐ 사업내용

-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의 기술이전 사업화를 위한 제품화 또는 이전기술 실증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160백만원

☐ 지원규모 : 과제 당 최대 80백만원 × 2개 과제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시 ~ '24. 1. 31까지

☐ 지원방식 : 직접지원방식

- 기업(특화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사업비 집행
 - ※ 특화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모두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나, 사업비는 위탁연구개발비로 지급(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 지침 준용)
 - ※ 공공연구기관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일 경우 포항공과대학교 내부과제(SAP)로 사업비 편성
 - ※ 과제의 성과 소유는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지원대상 : 포항강소특구 지정일('19. 6.) 이후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

□ 지원내용

○ 기업(특화지원기관) -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형

- 특화지원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공공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전받은 기술을 실증하고자 희망하는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

※ 첨단신소재(바이오, 에너지, 나노) 및 4차산업(AI, 빅데이터, IoT) 관련 공공 기술 실증화 우대

- 공공연구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 공공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공공기술 실증화가 가능한 포항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

※ 해당 공공기술의 발명자와 컨소시엄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화 가능한 연구자와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지원방법

○ 신청기업은 포항강소특구 지정일 이후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이전 받은 공공기술의 소유 공공연구기관(공공기술 발명자)과의 컨소시엄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화 가능한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와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경북 포항시 내 공공연구기관 >

○ 경북 포항시 내 공공연구기관

- 포항공과대학교,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동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포항지질자원연구실증센터), 기타 포항 소재 공공연구기관

□ 지원제외 대상

- '22년, '23년 기술이전사업화(R&BD) 수행기업 또는 선정기업
- '22년도 기술이전실증지원사업 수혜기업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의 “제14조(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공고문 8페이지 참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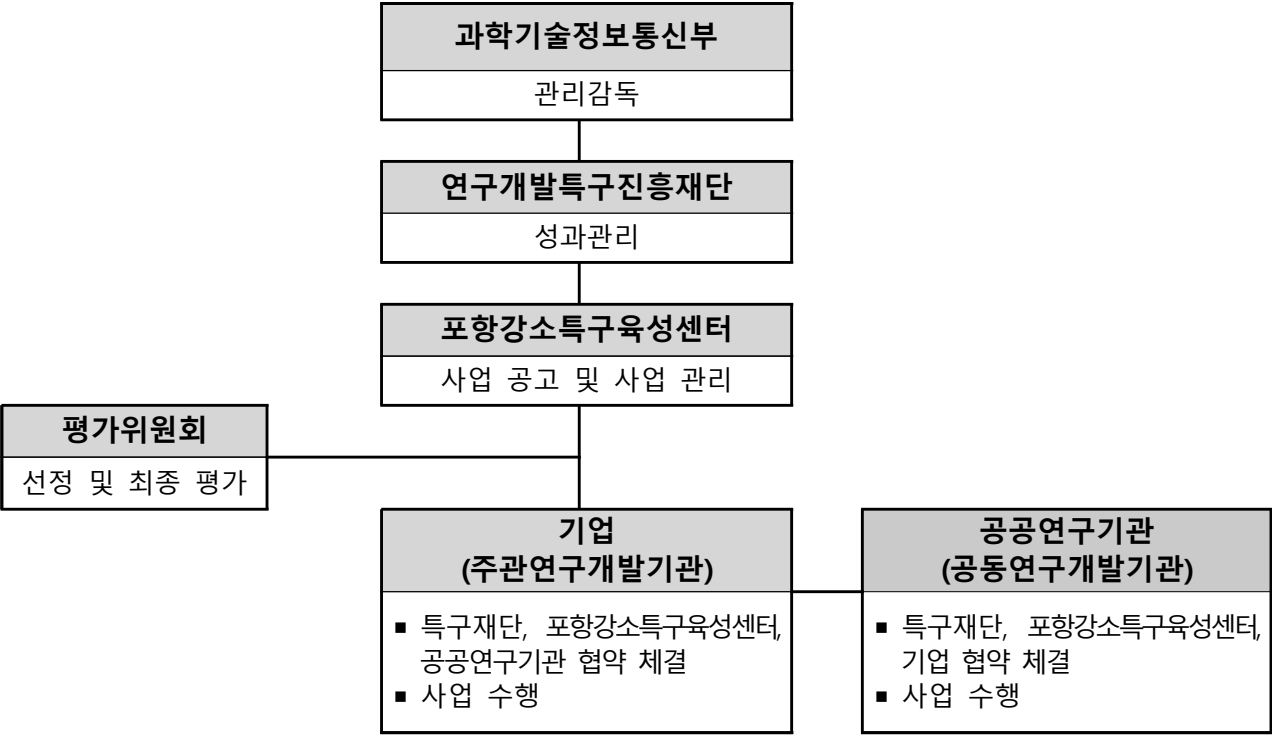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기업 - 공공연구기관간 공동 특허 출원 必(특허 출원비용은 사업비로 지원 불가하며, 기업 -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하여 지불)
- 권소사업간 사업비 배분은 50:50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 6. 20. ~ '23. 6. 29.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3. 6. 20. ~ '23. 6. 29.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3. 7월 중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4. 2. 15)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회계정산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24. 2. 29)	○회계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주요 내용	비중(%)
목적성	• 사업(실증)의 필요성	30
	• 사업내용의 구성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의 적정성	•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40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적합성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사업성	•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30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사업 후속 연계 성과 창출 전략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함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탈락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게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개발사업 운영 자체 기준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http://innopolis.postech.ac.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innopolis.or.kr>)
- 포항공과대학교(<https://www.postech.ac.kr>)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http://www.rist.re.kr/>)
- 포항테크노파크(<https://www.ptp.or.kr/>)
- 포항시(<http://www.pohang.go.kr/>)

○ 제출방법 : PDF파일로 E-mail 제출

○ 접수기간 : '23. 6. 20.(화) ~ '23. 6. 29.(목), 18:00까지

○ 접수처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박성조 책임연구원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수행기관(기업)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20 ~ '22),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비영리 제외)
11	기술이전 계약서* * '19. 6 이후 기술이전 계약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박성조 책임연구원	054-279-9307	psj2686@postech.ac.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포항강소특구 특화분야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특구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첨단신소재(바이오·에너지·나노 소재) 제품 상용화 시 필요한 성능시험, 안전성평가,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전략 등에 대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기업 맞춤형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60백만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 선정시 ~ '24. 1. 31 까지

☐ 지원 방식 : 간접지원(바우처 방식)

※ 바우처 :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전문수행기관이 공급하고 제공의 대가를 전문수행기관에게 사후에 지불하는 방법

☐ 지원대상 : 포항강소특구 내 기업 중 TRL 5 ~ 9 단계에 해당되는 제품 상용화 기업

※ 첨단신소재(바이오, 에너지, 나노) 관련 기업 우대

☐ 지원내용

- 시험평가/인증/인허가, 제품제작, 사업화 전략 3개 지원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춰 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

* 패키지 지원은 기업당 신청 가능한 최대 지원규모는 30백만원

지원 분야	지원내용(세부분야)	사업결과물	매칭방법	지원금액
시험평가/ 인증/ 인허가	(바이오) (시)제품의 독성, 안전성 평가 등	분석보고서	전문수행기관 자율 매칭 필수	최대 30백만원
	(시)제품 시험분석 등 성능평가 지원	공인시험성적서		최대 15백만원
	제품의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지원	인증서, 인허가서		최대 15백만원
제품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존 제품 성능 보완	시제품		최대 30백만원
	제품 및 공정 설계, 제품 디자인, 브랜드 개발	설계도, 도면, 브랜드 등 결과물		최대 15백만원
사업화 전략	IPO를 위한 컨설팅	보고서		최대 15백만원
	기업의 특허 강건화 전략 컨설팅	보고서		최대 15백만원

□ 지원제외 대상

- '22년 첨단신소재 All-in-One 패키지 지원사업 수혜기업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의 “제14조(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공고문 17페이지 참조)

□ 지원방법

- 신청기업(주관기관)은 각 지원 분야별 최대 지원 규모(분야별 상이) 내에서 단일 또는 패키지로 구성하여 사업 신청(기업 당 최대 신청규모는 30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신청하되 아래 전문수행기관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선정평가지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
- 시험평가/인증/인허가(바이오 (시)제품의 독성, 안전성 평가) 분야는 식약처 시험평가기관(의료기기, 비임상, 화장품 등) 또는 CRO 전문기관으로 전문수행기관 매칭 시 우대
- 사업비 지급은 최종평가 후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서 전문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 지급이 불가할 수도 있음(연구개발혁신법 제 32조 제1항)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사업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음(단, 사전협의 必)

—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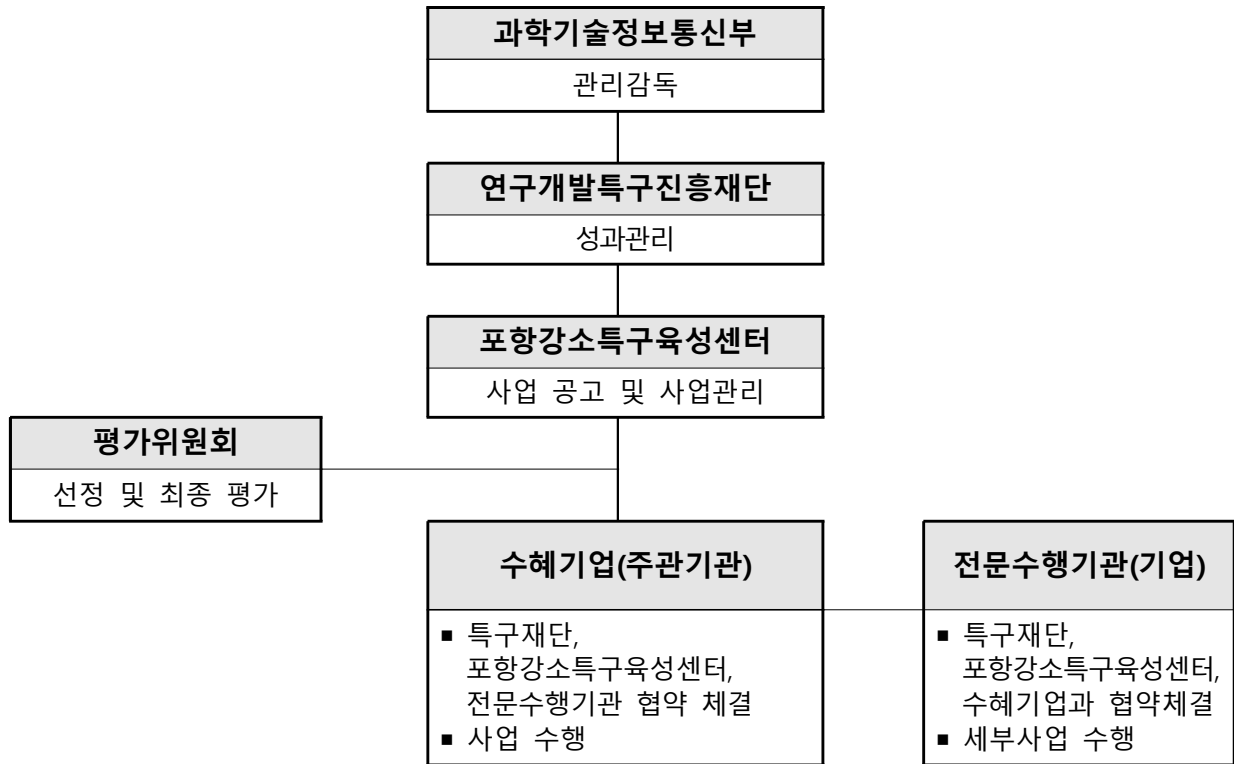
-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3. 6. 20. ~ '23. 6. 29.	○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3. 6. 20. ~ '23. 6. 29.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3. 7월 중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협약체결	평가 후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24. 2.15)	○ 사업결과 보고/최종평가
↓		
회계정산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24. 2. 29)	○ 회계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 평가항목

분류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신청기업 (80)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20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30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3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전문수행기관 (20)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	• 지원분야의 수행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20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계			100

※ 평가항목 및 비중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함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탈락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다만,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 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검토사항	내용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사전지원제외(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회생인가를

검토사항	내용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제외 조치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2) 사후관리(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 1.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사후관리 조치사항>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과제 참여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참여연구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검토사항	내용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총 과제수행 참여율을 기관 고유 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사.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포항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운영 자체 기준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및 관련 양식 교부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홈페이지(<http://innopolis.postech.ac.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innopolis.or.kr>)
- 포항공과대학교(<https://www.postech.ac.kr>)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http://www.rist.re.kr/>)
- 포항테크노파크(<https://www.ptp.or.kr/>)
- 포항시(<http://www.pohang.go.kr/>)

○ 제출방법 : PDF파일로 E-mail 제출

○ 접수기간 : '23. 6. 20.(화) ~ '23. 6. 29.(목), 18:00까지

○ 접수처 :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임지영 주무관 (054-279-9305, ljy940215@postech.ac.kr)

□ 제출자료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	수혜기업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별첨)	수혜기업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수행기관(기업)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 날인하여 제출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20 ~ '22), 모든 기관 각각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모든 기관 각각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11	전문수행기관 견적서	-	수혜기업 제출

□ 문의처

- 담당부서 :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 기술사업팀
- 사업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임지영 주무관	054-279-9305	ljy940215@postech.ac.kr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전문수행기관에게 있음